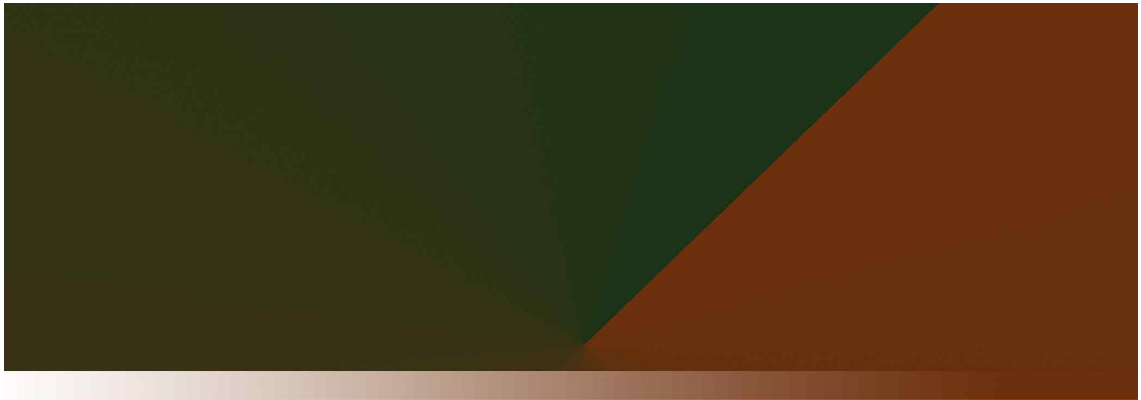




2019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개선
지역간담회

www.gokams.or.kr/artssdb



목차

2019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개선 간담회

I. 예술경영지원센터 소개

II.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1. 제도 도입 배경 및 근거
2.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3. 지자체별 공고 및 지정 시기 안내
4.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혜택

III.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IV. 2019 지정현황 안내

V. 전문예술법인·단체 기부금 관련 세법 강의

부록. 관련 서식

〈서식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변경)신청서

〈서식 2〉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실적

**2019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개선 간담회 안내**

2019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개선 간담회 안내

■ 목적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이해도 제고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혜택 및 의무사항 안내
- 제도 관련 질의응답 및 개선 논의 진행

■ 간담회 일정

시간	프로그램	비고
13:30~14:00	등록	
14:00~14:15	오리엔테이션	
14:15~14:30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안내	센터 직원 브리핑 진행
14:40~16:40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관련 세법 강의	한미회계법인 김소영 회계사
16:40~17:10	질의응답 및 현안 토론 간담회	
17:10~	간담회 종료	

I . 예술경영지원센터 소개

미션

예술유통 활성화와 예술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

비전

예술경제기반 조성 and 한국예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매개 기관

예술단체

예술단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 경영, 혁신성장기반 조성

공연시장

공연시장 조사, 유통마켓, 해외 진출 등 단계별 · 체계적 지원

미술시장

미술시장 조사 및 소비 진작 대중화 등 미술수요 확대

구분	예술단체 경영전문화 지원		예술시장 정보제공			유통 활성화 지원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단체역량	개인역량	실태조사	통합시스템	정보확산	마켓 & 페스티벌	기반마련	진출지원
공연분야	예술경영 컨설팅				더아프로	서울아트마켓 (PAMS)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해외진출 지원
	전문예술법인·단체 활성화 지원	예술경영 아카데미	공연예술 실태조사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위클리@예술경영	서울국제공연예술제 (SPAF)	공연예술 해외진출 기반 마련	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사업
						창작뮤지컬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시각분야	공공기금 지원 및 시각예술행사 평가		미술시장 실태조사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		작가미술장터	미술품 감정 기반 구축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더아트로		시각예술 도록 및 자료 번역 지원	

II.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1. 제도 도입 배경

1) 제도 도입 배경 및 근거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2000년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제10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가 제정되면서 시행되었다.

대부분의 주요 공연예술단체들이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민간의 경우 법인격이나 단체의 성격에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단체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세제혜택 등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고 국·공립예술단체의 경우 시장원리와 공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운영모델을 제시하려는 취지로 본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1년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의 도입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국·공립 예술단체의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자율성 침해 논란과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대두되었다. 또한 국·공립 예술단체의 공공성 유지와 예술단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국·공립예술단체들을 무조건 축소 또는 민영화하기보다는 새로운 운영방식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격 기능과 경쟁이라는 시장원리의 도입을 통한 공공부문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정부 및 지자체가 담당해온 기능들을 민간화 또는 민간과 협력하여 위축되었던 민간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둘째, 민간직업예술단체의 경우 공연예술단체의 수는 많으나 수준 있는 작품의 상시 공연체계를 갖춘 전문직업예술단체는 부족한 현실에서 체계적인 공연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단체를 전문 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공립공연장이 민간직업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상주단체 계약을 통해 국·공립 공연장은 전속단체를 가질 때보다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예술단체의 경우 상주단체로서 공연장소 및 기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얻음으로써 상시공연체계를 마련하여 직업예술단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영위하는 등 상호간 운영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1) 관련 법 시행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시·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0725호, 2011.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예술법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은 자 중 영리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 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로 본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제5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의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한다.
 1.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2. 재정 운영의 건전성
 3.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
 4. 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5]

제4조의2(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 ①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변경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제4조의3(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소)

- ① 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2.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법 제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시·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행위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취소 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부칙 <대통령령 제23318호, 2011.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각 지역별 제도 운영 현황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정을 시작으로 하여 2018년 4월 현재까지 17개 광역시도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표 4. 각 지역별 제도 운영 연혁 |

지정권 / 지역명	최초지정일자
문화체육관광부	2001. 06. 15
광주광역시	2001. 12. 18
경상남도	2001. 12. 31
서울특별시	2001. 12. 31
제주특별자치도	2002. 02. 09
대구광역시	2002. 03. 30
대전광역시	2002. 06. 25
강원도	2002. 08. 09
전라북도	2002. 12. 01
부산광역시	2003. 04. 01
인천광역시	2003. 11. 01
충청북도	2004. 02. 20
경기도	2005. 01. 01
울산광역시	2008. 01. 01
경상북도	2010. 01. 18
전라남도	2010. 02. 22
충청남도	2011. 10. 04
세종특별자치시	2016. 11. 15

3. 지자체별 공고 및 지정 시기 안내

지역	지정횟수	공고시기	지정시기
서울	1년 1회	9월	11월
경기	1년 1회	10월	1월
인천	1년 1회	10월	12월
대전	1년 1회	2월	3월
세종	1년 1회	10월	12월
충북	1년 1회	10월	12월
충남	1년 1회	12월	2월
강원	1년 1회	11월	12월
광주	1년 1회	10월	12월
전북	1년 1회	10월	12월
전남	1년 1회	2월	4월
부산	1년 1회	7월	11월
대구	1년 1회	4월	5월
울산	2년 1회	1월	2월
경북	수시 모집		
경남	1년 1회	10월	12월
제주	1년 1회	9월	11월

4.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혜택

1) 전문예술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전문예술단체에게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한도 안에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에 따라 개인 기부자인 경우 2천만 원 이하 기부자 소득금액의 30%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34조, 「소득세법」 제59조의4),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법인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2018년 시행된 법인세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세제적격단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해야한다. (붙임2 참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행대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된다.

2)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공개모집할 수 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비영리법인인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4)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전문예술법인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5) 각 시도별 행정적 지원

각 지자체 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각 시도별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범위 내 경비보조, 공공자금지원 우선, 공공시설의 대관, 시설 무상 제공 등 기타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붙임1. 관련 법령 및 개정 내용

■ 2017 세법개정안

- 기부금단체 범위 및 지정방식 합리화(법인법 §24②, 법인령§36①)

현 행	개 정 안
□ 지정기부금단체 ○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종교단체,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신 설〉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	□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좌 동)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기재부 고시로 지정) 시행령에서 당연지정 → 지정심사를 거쳐 기재부 고시로 지정

- 학술연구·문화예술 단체 등을 당연지정 기부금단체에서 제외하는 이유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정심사를 거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하고 사후관리 적용 ○ 반면, 학술연구·문화예술 단체 등의 경우 민법상 비영리법인임에도 별도 심사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당연 지정되고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나, - 현실적으로 대다수 단체의 경우에는 별도 지정심사를 거쳐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고 있는 실정임 (개정) 공익성 검증 등 지정심사를 거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고 사후관리도 적용 ○ 다만, 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존 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 등은 지정심사 없이 3년간('20.12.31.까지) 현재와 같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

■ 개정 법령 비교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개정 전	개정 후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8.2.29>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2.13.>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중략]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부칙<대통령령 제28640호,2018.2.13.> 제1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보호운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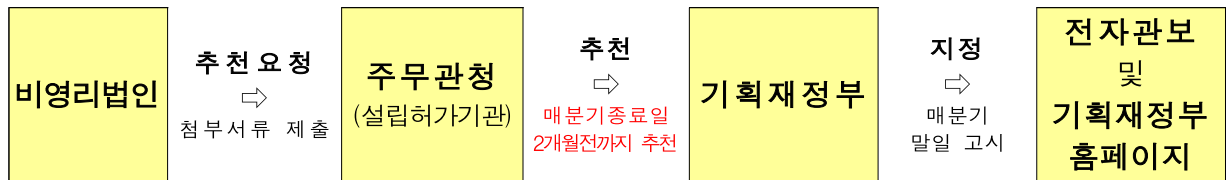
■ 기획재정부 고시(2018.03.30.)

고시번호 제 2018-9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번호	기 부 금
34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단체에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붙임2.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절차

1. 신청절차



※ 주무관청은 **매분기 마지막달 2개월전까지 기한을 지켜 추천(시행규칙 제18조3)**

→ 2019년 기준 : 1분기(1/31), 2분기(4/30), 3분기(7/31), 4분기(10/31)

2. 추천 대상법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사단·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외국법인·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주무관청은 아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우선 검토 후 추천대상 선정)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1호 바목)

①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의 취지는 사업수혜자가 회원 및 소수의 특정인만을 위해 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 1. 공익목적이 아닌 회원 또는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거나 친목도모 성격의 단체는 지정대상에서 배제됨 2. 단체명에 생존하는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②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 [잘못된 사례]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 가능한 정관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

③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불인정)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재지정신청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 주무관청은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여 추천서(기부금의 용도 및 관리방법 란)에 기재하고, 반드시 불특정다수가 공익목적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금단체 명의의 독립된 한글홈페이지가 개설될 것.
④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
⑤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것 * 지정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의 사유가 지정요건 사유에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3. 추천서 제출서류

- ① 주무관청장의 관인이 날인된 별지 제63호의 2 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주무관청이 작성하여 반드시 관인 날인(관인날인 누락시 추천서 반려 처리됨)
- ② 법인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구 분	제출서류
민법상 사단재단 법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말소사항을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로 한정)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및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말소사항을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로 한정)
비영리외국법인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법인의 설립에 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정 관
- ④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2019년~2023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⑤ 최근 3년간(‘16~’18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19년) 예산서*

- * 제출일 현재 법인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i)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ii)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iii) 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 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4. 추천방법

- ① 법인은 제출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청
- ②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마지막달 2개월전*까지 추천서 (제출서류 포함)**를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제출

* 매분기별 추천기한(2019년기준) :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 모든 서류는 매분기별 추천기한까지 기한을 지켜 제출(예외 불인정)

-> 첨부문서 용량이 많을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제출(e-mail 제출 불인정)
(e-mail로 첨부문서를 송부할 경우 대용량 첨부파일의 다운로드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지정요건 검토시 상시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5. 지정기간

- ① 지정기간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6년간

* 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

- ②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 추계신고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6. 의무이행 및 사후관리의무

- ① 지정기부금 단체

- 1) 지정 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말까지)에 해당 법인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 2) 지정 후 2년마다('19년부터는 매사업연도마다) 의무의 이행 여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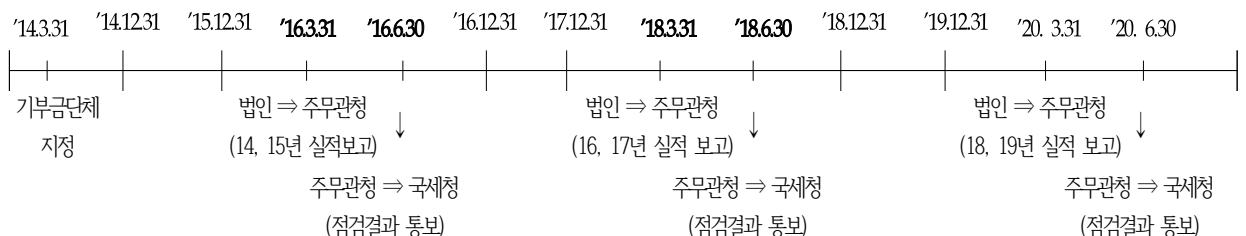
* 1~4년차는 3년, 5년째 되는 해의 3.31, 5~6년차 실적은 7년째 되는 해의 3.31까지 제출

- 3)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3 서식(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급
- 4) 3)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법인가부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 서식, 개인기부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1))
- 5) 관할세무서장이 3)의 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6) 3)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

- ② 주무관청 : ①의 2)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점검결과(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 사실)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1~2년차는 3년, 3~4년차는 5년, 5~6년차는 7년째 되는 해의 6.30까지 국세청에 통보

* 해당 기한까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

<사례> 2014년 3월 31일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법인의 경우



7.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 ① 해당 법인이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제5항 각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다.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③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④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⑤ 법인이 해산한 경우

8. 재지정 배제사유

-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7.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의 ②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 배제

지정기간(6년) 종료 후 재신청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신규 신청』 절차와 동일(공문에 ‘재신청’ 표기) 지정기한 6년(지정연도 포함)이 종료된 후* 재신청

* 지정기간이 2019.12.31일까지인 경우에는 2020.1.1이후 재지정 신청

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① 이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명칭변경 요청

- ② 명칭변경요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법인이 명칭변경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분기 마지막달 2개월전까지* 다음의 서류와 함께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명칭변경 의뢰

→ 2019년 기준 : 1분기(1/31), 2분기(4/30), 3분기(7/31), 4분기(10/31)

가. 개정 전·후 정관(신구 대비표 첨부, 이전 사업내용 동일여부 확인)

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③ 기획재정부장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

Q. 4/4분기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는데, 지정받기 이전인 1/4~3/4분기에 기부금을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1/4~4/4분기 중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만 하면 당해연도 1.1일부터 소급해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부금단체로 지정 받은 후 1/4~3/4분기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해 주시면 됩니다.
Q. 주무관청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무관청은 어디인가요?
A. 주무관청이란 법인설립 허가기관입니다.
Q. 올해 설립해서 결산서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제출일 현재 법인 설립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i)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ii)해당 사업 연도 예산서, (iii)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Ⅲ.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1.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정을 준비하는 문화예술단체의 지정업무 지원 및 지정단체의 지속적 육성이 가능하도록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고자 추진되었다. 본 사업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정보 제공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며, 전문예술법인·단체를 비롯한 국내 문화예술단체의 기본정보 및 활동내용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제공함으로써 예술경영 관련 정보의 활용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2. 2019년도 세부 사업계획

● 제도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상반기)

전문예술법인·단체 관련 변경 제도, 현안 공유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
제도 담당 공무원 및 문화예술기관을 대상으로 안내 추진

● 제도 담당 공무원 워크숍 및 제도설명회 개최 (상반기)

지자체 제도 담당 공무원, 관련 전문가 참여 워크숍 개최
참석을 희망하는 전문예술법인·단체 대상 제도 설명회 개최

●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 실적 조사 및 백서 발간 (6~11월)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제도 관련 정보 및 지정 현황, 전문예술법인단체 실적 통계 분석
자료를 통한 제도 운영 및 활성화 지원

● 예술경영 우수사례 공모 및 컨퍼런스 개최 (7~10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기획 및 수행, 조직 운영, 재원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

● 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연중 상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
지정 희망 단체 설문을 통한 수요 파악 및 인식 조사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연중 상시)

전문예술법인·단체 데이터베이스 등 문화예술 기관단체 데이터 취합 및 제공

IV. 2019 지정현황 안내

3. 2019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현황

1) 전체 지정현황

● 2019년 10월 8일 기준으로 지정이 유효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총 1,249개로 파악되었다.

| 표 6.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전체현황 |

2019. 10. 08 기준

지역/ 지정권자	합계	법적형태				지정유형	
		임의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법인
문체부	20	0	1	18	1	0	20
서울	239	145	70	24	0	145	94
부산	123	83	37	3	0	83	40
대구	93	73	13	7	0	73	20
인천	43	27	14	2	0	27	16
광주	76	46	27	3	0	46	30
대전	45	29	14	2	0	29	16
세종	8	3	4	1	0	3	5
울산	26	25	0	1	0	25	1
경기	117	73	21	22	1	74	43
강원	103	58	32	13	0	58	45
충북	32	23	8	1	0	23	9
충남	32	11	16	5	0	11	21
전북	43	17	22	4	0	17	26
전남	47	31	14	2	0	31	16
경북	24	12	8	4	0	13	11
경남	162	102	54	5	1	103	59
제주	16	10	5	1	0	10	6
합계	1,233	758	355	117	3	761	472

2) 지자체별 지정현황

- 2019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소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권이 가장 많은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 표 7. 지역별 지정현황 |

2019. 10. 8 기준

지역	합계(개)	비율(%)	지역	합계	비율(%)
중앙	20	2%	문화체육관광부	20	1.60%
수도권	399	31.95%	서울특별시	239	19.14%
			경기도	117	9.37%
			인천광역시	43	3.44%
충청권	117	9.37%	대전광역시	45	3.60%
			충청북도	32	2.56%
			충청남도	32	2.56%
			세종특별자치시	8	0.64%
강원도	103	8.25%	강원도	103	8.25%
전라권	166	13.29%	광주광역시	76	6.08%
			전라북도	43	3.44%
			전라남도	47	3.76%
경상권	428	34.27%	부산광역시	123	9.85%
			대구광역시	93	7.45%
			울산광역시	26	2.08%
			경상북도	24	1.92%
			경상남도	162	12.97%
제주권	16	1.28%	제주도	16	1.28%
합계	1,249	100.00%	합계	1,249	100.00%

3) 법적 유형별 현황

- 2019년 전문예술법인·단체를 법적 유형별로 살펴보면 임의단체가 전체의 63.2%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27.3%, 재단법인 9.3%, 사회적협동조합 0.3%로 총 36.9%를 차지하고 있다.

| 표 8. 법적유형별 지정현황 |

2019. 4. 12 기준

합계		법적유형			
		임의단체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합계(개)	1,249	768	360	118	3
비율(%)	100%	61%	29%	9%	0.2%

4) 사업유형별 현황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사업유형은 크게 공연예술분야, 시각예술분야, 기타분야로 구분하며, 상세분류는 다음과 같다.

| 표 9. 전문예술법인·단체 사업유형 분류기준 |

사업유형		주요 사업내용
공연예술분야	무용단체	동서양의 고전무용 및 발레, 모던댄스 등을 기반으로 창작, 제작기획 및 보존
	연극단체	연극, 뮤지컬, 마임 등 극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창작, 제작기획 및 보존
	음악단체	오페라, 합창, 오케스트라 등 서양 클래식음악 기반의 창작, 제작기획 및 보존
	전통예술단체	전래 또는 전통 공연양식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창작, 제작기획 및 보존
	공연장운영	공연대관, 공연기획 및 제작 등 공연장을 운영
	기획/기획사	각종 공연상품을 제작기획하여 대중에게 유통판매
	축제	예술축제, 엑스포, 문화관광 지역축제 등
	공연분야협회	공연관련 분야 협회
	기타	예술교육 등 종합 및 기타 문화예술관련 사업
시각예술분야	전시행사	시각예술분야 관련 사업
	전시장운영	전시장 운영
	전시분야협회	전시관련 분야 협회
기타분야		시·도 출연 문화재단 및 전문예술관련 사업

| 표 10. 사업유형별 지정현황 |

2019. 10. 8 기준

합계		공연예술	시각예술	기타
합계(개)	1,249	992	89	168
비율(%)	100%	79%	13%	7%

4) 시도별 지자체 조례 비교 및 분석

항목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강원	광주	전북	전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
지정 계획	●	●	○	×	×	×	×	×	○	●	×	×	×	○	×	×	●
실적 보고 의무	○	○	×	○	○	×	○	×	○	○	×	○	×	○	×	×	×
지정 혜택	○	○	○	○	○	○	○	○	○	○	○	○	○	○	○	○	○
지정 취소	○	○	×	×	×	○	×	○	○	×	○	×	○	○	○	○	×

지정계획의 경우, 구체적인 지정 공고 시기까지 명시되어 있을 경우 ●로 표시함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심사 기준 예시 (제주)

가. 공연분야

- 1) 최근 2년간 공연 활동 실적에 대해 작품성, 전문성, 공연 기획의 참신성, 관객 확보율, 공연이나 기획에 대한 반응 등 작품의 완성도와 단체 운영의 전문성
- 2) 전문예술인·전문기획자·무대예술전문인 자격 소지자 등 전문 인력의 보유 상태와 재정상태, 전용 시설의 보유 상태 등 조직 역량
- 3) 관객이나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주요 작품의 보유 상태·작품이나 단체의 수상경력, 해외공연 참가 경력과 성과 등 공연장이나 예술단의 대외적 평가
- 4) 도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익성을 고려한 기획 등 사회 기여도

나. 미술분야

- 1) 최근 2년간 창작지원 및 전시 활동 실적에 있어 독창성, 예술성, 참신성, 전문가 평가 및 일반 관람객 반응, 미술 발전 기여도 등
- 2) 창작 및 전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보유 상태, 재정능력, 전용 시설 보유 상태 등 조직 역량
- 3) 해외진출 실적 등 경쟁력 있는 양질의 유·무형의 문화자원의 생산실적과 작가 발굴 등
- 4) 도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익성을 고려한 기획 등 사회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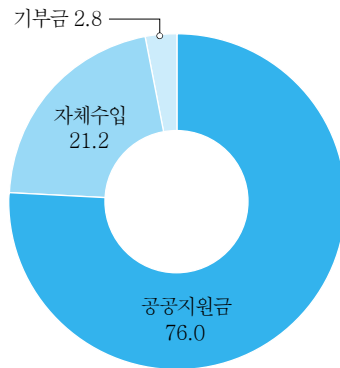
※참고 : 2018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현황 조사결과 (2017년 기준)

1) 재정현황

- 「2018년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에 실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공공 지원금의 비율이 76%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자체수입 21.2%, 기부금 2.8%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출현황은 공연·전시 이외 사업비가 42%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경상운영비 35.3%, 공연·전시 사업비 22.7%로 조사되었다. 기부후원금의 경우, 기업기부금이 75%, 개인기부금이 25%로 기업기부금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조사에 응답한 849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1.3%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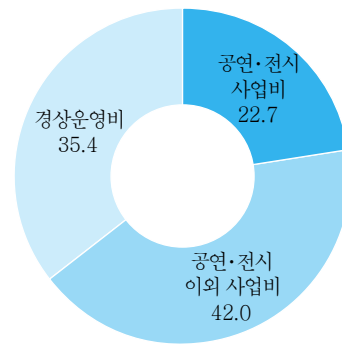
| 그림 1 | 수입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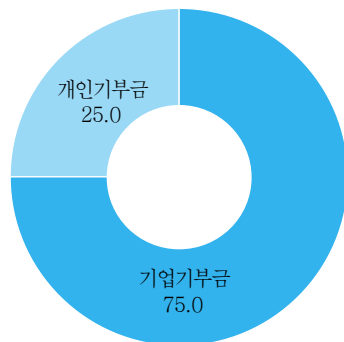
| 그림 2 | 지출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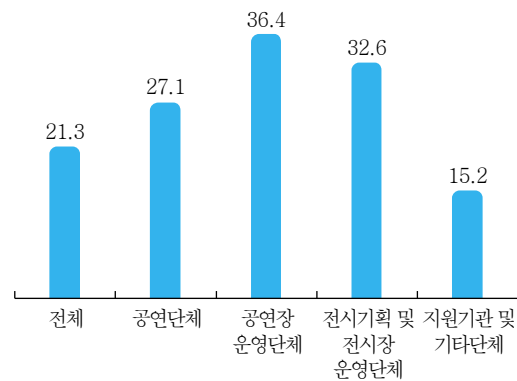
| 그림 3 | 기부금현황

(단위 : %)



| 그림 4 | 재정자립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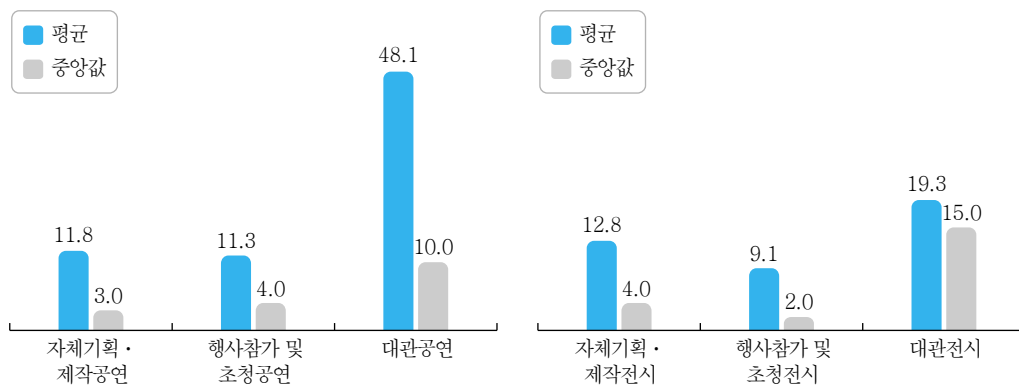
(단위 : %)



2) 활동실적 현황

- 「2018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에 따르면, 공연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766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공연실적은 자체기획·제작 공연은 평균 11.8편, 행사참가·초청 공연은 평균 11.3편, 대관공연은 평균 48.1편으로 나타났다. 전시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195개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전시실적은 자체기획·제작 전시는 평균 12.8편, 행사참가·초청 전시는 평균 9.1편, 대관전시는 평균 19.3편으로 나타났다.

| 그림 5 | 공연실적 현황(평균) (단위 : 편) | 그림 6 | 전시실적 현황(평균) (단위 : 편)



V. 전문예술법인·단체 기부금 관련 세법 강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혜택

한미회계법인 김소영회계사

1

목차

1. 개요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 지정기부금단체 및 기부금세제
4. 기부금공개모집 허용
5.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2

1.개요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인정
- 전문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 단, 전문예술법인은 별도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절차 필요
-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 지정기부금단체 = 공익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 각 시도별 행정적 지원
 - 각 시도별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범위 내 경비보조, 공공자금지원 우선, 공공시설의 대관, 시설 무상제공 등 기타 행정적 지원 사례

3

2.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문화예술단체의 유형

구 분			전문예술 지정가능	특 징
법인격 없음	임의단체 (법인 아닌 단체)		○	- 법인설립 허가 없이 임의로 구성된 단체 - 세법상 "법인 아닌 단체"로 칭함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제출 시 고유번호 부여(소득세사무처리규정)
	법인으로 보는 단체		○	- 법인설립 허가를 얻지 않아 법인은 아니지만,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함 - 즉, 민법상 법인은 아니지만, 세법상으로만 법인으로 보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서" 제출 시 고유번호 부여(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법인격 있음	영리법인		X	대부분 주식회사, 협동조합 포함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	일정 인원으로 구성되어 법인설립 허가를 얻음
		재단법인	○	일정 재산으로 구성되어 법인설립 허가를 얻음
개인사업자			○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됨

4

2.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함
- 아직 손금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리 손금으로 인정
- 소득 감소효과 → 법인세 감소효과

5

2.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세법상 과세기준 : 소득

회계	법인세	소득세
수익	익금	총수입금액
비용	손금	필요경비
이익	소득(과세표준)	소득(과세표준)

6

2.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 각사업연도소득

기업회계	세무조정	세무회계
수익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익금
(-)		(-)
비용	(-) 손금산입 (+) 손금불산입	손금
II		II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	각사업연도소득

→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만 손금인정!

7

2.고유목적사업준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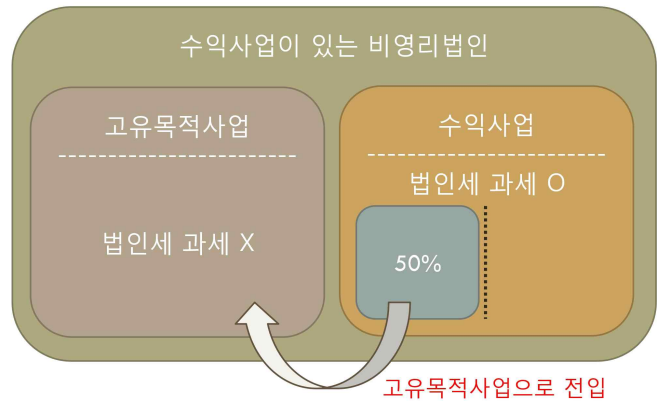
-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 각사업연도소득의 관계

기업회계	세무조정	세무회계	최종 기업회계
수익 1,000		익금 1,000	수익 1,000
(-)		(-)	(-)
비용 700	(-) 손금산입 150	손금 850	비용 700
II		II	II
당기순이익 300		각사업연도소득 150	당기순이익 300
법인세 (60)		법인세 (30)	법인세 (30)
세후이익 240			세후이익 270

8

2.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구조
 -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음
 - 수익사업소득의 50% 한도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 가능
 - 준비금으로 전입하는 금액만큼 수익사업 소득 감소 → 법인세 감소효과
 - 단,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다시 부과, 이자상당액 추징



9

2.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수익사업소득의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가능한 단체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서 기획재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1호)
 - (재)국립발레단, (재)국립오페라단, (재)국립합창단, (재)정동극장, (재)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재)서울예술단

10

2.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각 유형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

구 분			전문예술 지정가능	사업자등록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실익 여부
법인격 없음	임의단체 (법인 아닌 단체)		○	사업자등록 X (고유번호증만 있음)	- 고유목적사업만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 X - 법인세 신고도 하지 않음 - 즉,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할 필요 없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수익사업도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	- 수익사업 부문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의무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인한 실익 ○
법인격 있음	영리법인		X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언제나 사업자등록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불가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	임의단체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동일	
		재단법인	○		
개인사업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언제나 사업자등록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불가

11

2.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은 수익사업이 있는 모든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으로 인한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음
- 수익사업소득의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가능한 6개 단체
 -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기재부 고시에 의해 100% 전입 가능한 것이지,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받았다는 것만으로 100% 전입가능한 것은 아님

12

3.지정기부금단체

- 세무상 기부금단체의 종류
 - 법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제24조)
 - 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중 하나
- 모든 단체가 기부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 세무상 기부금단체만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하고, 기부자도 기부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비지정 기부금단체가 기부금영수증 발급하더라도 기부자에게는 무의미

13

3.지정기부금단체

- 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전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 포함)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였으나,
 - 2018.02.13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후 전문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 전문예술법인은 기재부 지정을 받지 않는 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개정 전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했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간주함**
 - 즉, 기존 전문예술법인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받아야 함

14

3.지정기부금단체

- 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번호	기 부 금
1	삭 제 <2018.3.30.>
2	삭 제 <2018.3.30.>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4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단체 에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5

3.지정기부금단체

- 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2018.02.13 개정)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지정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제1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3.지정기부금단체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효과
 -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 것만으로 기부금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
 -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의미 있음
 - 타 단체와의 차별성
 - 공익법인으로서 기부금에 대해 상속·증여세 납부의무 면제(후술)

17

3-1.기부금세제

- 각 유형별 기부금수입으로 인한 세금 증가 여부

구 분			전문예술 지정가능	사업자등록 여부	기부 받은 경우 세금 증가 여부
법인격 없음	임의단체 (법인 아닌 단체)		○	사업자등록 X (고유번호증만 있음)	- 고유목적사업만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 X - 법인세 신고도 하지 않음 - 따라서 기부금으로 인한 세금 증가 X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수익사업도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	- 수익사업이 있더라도 기부자는 대부분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기부함 - 따라서 수익사업 소득 증가 X, 세금 증가 X
법인격 있음	영리법인		X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언제나 사업자등록 ○	세금 증가 ○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	임의단체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동일	
		재단법인	○		
개인사업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언제나 사업자등록 ○	세금 증가 ○

18

3-1.기부금세제

• 법인기부자

기부금의 종류	손금산입한도	세액감소 효과
법정기부금	소득금액 50%	손금산입 한도 내 기부금 지출액의 20% (지방소득세 제외 기준)
지정기부금	소득금액 10%(사회적기업 20%)	

• 개인기부자

기부금의 종류	세액공제한도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한도없음	기부금액의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지방소득세 제외 기준)
지정기부금	소득금액 30%	

19

3-1.기부금세제 - 손금산입

- 세무상 기부금의 정의
 -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반대급부 없어야 함)
 -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함
 -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사업과 관련 있다면 접대비)
- 즉, 기부금은 그 정의상 사업과 관련 없어야만 하므로 언제나 손금불산입 대상임
- 손금을 불산입하면 각사업연도소득 증가 → 법인세 증가
- 따라서 총 비용이 동일할 때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클수록 법인세가 증가할 수 밖에 없음

20

3-1.기부금세제 -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 각사업연도소득

기업회계	세무조정	세무회계
수익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익금
(-)		(-)
비용	(+) 손금산입 (-) 손금불산입	손금
II		II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	각사업연도소득

→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만 손금인정!

21

3-1.기부금세제 - 손금산입

- 사례1) 세무조정사항 없는 것으로 가정

기업회계	세무조정	세무회계	최종 기업회계
수익 1,000		익금 1,000	수익 1,000
(-)		(-)	(-)
비용 700	없음	손금 700	비용 700
II		II	II
당기순이익 300		각사업연도소득 300	당기순이익 300
법인세 (60)		법인세 (60)	법인세 (60)
세후이익 240			세후이익 240

22

3-1.기부금세제 - 손금산입

- 사례2) 사례1에서 추가로 상여 100을 지급한 경우

기업회계	세무조정	세무회계	최종 기업회계
수익 1,000		익금 1,000	수익 1,000
(-)		(-)	(-)
비용 800	없음	손금 800	비용 800
II		II	II
당기순이익 200		각사업연도소득 200	당기순이익 200
법인세 (40)		법인세 (40)	법인세 (40)
세후이익 160			세후이익 160

비용100 증가
소득 100 감소
법인세 20감소
세후이익 80감소

23

3-1.기부금세제 - 손금산입

- 사례1) 세무조정사항 없는 것으로 가정

기업회계	세무조정	세무회계	최종 기업회계
수익 1,000		익금 1,000	수익 1,000
(-)		(-)	(-)
비용 700	없음	손금 700	비용 700
II		II	II
당기순이익 300		각사업연도소득 300	당기순이익 300
법인세 (60)		법인세 (60)	법인세 (60)
세후이익 240			세후이익 240

24

3-1.기부금세제 - 손금산입

- 사례3) 사례1에서 추가로 **기부금 100**을 지급한 경우

기업회계	세무조정	세무회계	최종 기업회계
수익 1,000		익금 1,000	수익 1,000
(-)		(-)	(-)
비용 800	(+)기부금 손금불산입 100	손금 700	비용 800
II		II	II
당기순이익 200		각사업연도소득 300	당기순이익 200
법인세 (40)		법인세 (60)	법인세 (60)
세후이익 160			세후이익 140

비용100 증가
소득 동일
법인세 동일
세후이익 100감소

25

3-1.기부금세제 - 손금산입

- 다만, 민간 기부문화를 독려하기 위해 한도를 정하여 한도 내의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함 ⇒ **굳이 표현하면 이것이 기부금 세제 혜택**
- 즉,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지출한다면 다른 비용과 동일하게 손금 인정됨
- 한도를 초과하여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이후 10년간 이월하여 손금산입 가능
- 기부금 한도 이내에서는 기부금과 그 외 비용의 절세효과가 동일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기부금 세제 혜택만을 위해 기부금을 지출할 이유 없음
- 결국, 기부금 지출 여부는 경영자의 가치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26

3-2.기부금세제 – 개인 세액공제

- 2014년부터 개인 기부금의 세제혜택 방식이 특별소득공제 → 특별세액공제로 전환됨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1천만원까지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
- 고액기부금 기준 금액 기존 2천만원→2019년부터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

27

3-2.기부금세제 – 개인 세액공제

-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계산사례(지방소득세 제외 기준)

사례1) 소득 5천만원, 기부금 1백만원인 경우

- 5천만원의 30%인 1천5백만원이 공제한도, 따라서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대상
- 1백만원 $\times$ 15%=**150,000원** 세액공제

사례2) 소득 2억원, 기부금 1억원인 경우

- 2억의 30%인 6천만원이 공제한도, 4천만원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공제
- (1천만원 $\times$ 15%) + (5천만원 $\times$ 30%)= 1,500,000원 + 15,000,000원 = 16,500,000원
- 따라서 세액공제 금액은 **16.5백만원**

28

3-3.기부금세제 - 제출서류

- 기부받은 경우 제출서류
 -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 허위발급 시 2% 가산세
 -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구 분	작성 및 제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 작성하여 5년간 보관 •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0.2% 가산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 기재 • 작성하여 5년간 보관 •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관할세무서 제출(홈택스 가능)

29

4.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1천만원 이상의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에게 등록하여야 함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 정부 또는 지자체 소속 예술단체뿐만 아니라 출연기관(예: 지자체 출자출연 문화재단 등)도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으며,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더라도 접수할 수 없음
 - 단,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접수 가능

30

4.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반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는 동법을 적용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음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하략)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31

4.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에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용)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10~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제14조(공개 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모집자와 모집중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낼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1억원)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2

4.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 기부금법 전체를 적용 받지 않는 것인지, 모집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받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 상이
-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공식 의견을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설사 법률 전체를 적용 받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오더라도,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

33

5.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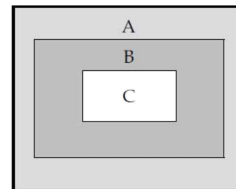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은 경우 상속세·증여세 부과
- 다만, 공익법인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증여세를 면제함
- 공익법인의 범위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법정기부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공익기부금**).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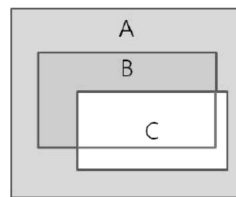
5.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 공익법인의 범위
 - 개정전



A : 비영리법인
B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C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 개정후
 - 2018.02.13 개정
 - 단, 2018.12.31 기준 공익법인은 2020.12.31 까지 공익법인 지위 유지



A : 비영리법인
B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C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35

5.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 상증법상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구 분	내 용
출연재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미사용 시 증여세 부과
출연재산 매각대금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상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미사용 시 증여세 부과
출연재산 운용소득	1년 이내 70% 상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미사용 시 증여세 부과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1/5를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취임 금지
특정기업의 광고금지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홍보 금지
자기내부거래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수익 금지
특정계층에만 수혜 금지	출생지, 직업, 학연 등 특정계층에만 혜택이 제공될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
공익법인 해산	잔여재산을 국가, 지자체 또는 유사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함

36

5.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 상증법상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구 분	내 용
공익법인 보고서	(대상)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제출) 결산에 관한 서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 다음연도 3월말까지
결산서류등 공시의무	(대상) 자산총액 5억, 수입금액 3억 이상인 공익법인 (제출) 홈택스 공익법인공시 ⇒ 다음연도 4월말까지
장부의 작성,비치	장부 및 각종 증명서류 10년간 보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대상) 자산총액 5억, 수입금액 3억 이상인 공익법인 (제출)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 ⇒ 다음연도 3월말까지
외부회계감사	(대상)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제출) 외감법상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 제출 ⇒ 다음연도 3월말까지
전용계좌 개설,사용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 신고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지출은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상증법상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의료법인, 학교법인 제외) 20억 이하인 경우 2019년까지 적용유예 가능, 2020년부터 당연 적용

37

Q&A

감사합니다

38

[illegible]

※ 코드란에는 법정기부금(10),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30), 지정기부금(40)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사업연도 (과세기간)	. . . ~ . . .
----------------	---------------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	① 단 체 명		② 대 표 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고 유 번 호)		④ 전화번호	
	⑤ 소 재 지			
	⑥ 유 형 (해당란에 √)	☐ 정부등 공공 ☐ 교육 ☐ 종교 ☐ 사회복지 ☐ 자선 ☐ 의료 ☐ 문화 ☐ 학술 ☐ 기타		

2.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단위: 원)

⑦ 구 분 ⑫ 기부자	⑧ 합 계		⑨ 법정기부금		⑩ 특례기부금		⑪ 지정기부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법 인								
개 인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 1.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⑥ 유형란: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 3. ⑧ ~ ⑪ 란: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

부록. 관련 서식

〈서식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변경)신청서

〈서식 2〉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실적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변경)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	법인(단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신청 내용	신청구분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단체
	예술단·공연장 등의 명칭		
	소재지 (예술단 등)	(전화번호:)	

법인 · 단체 현황	법인·단체 목적사업												
	법인·단체 성격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임의단체			
	법인·단체 설립 등 기준일	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전시일)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법인전환일 (등기 연월일)			
	예술단 등의 재무현황 ※①②중 해당 기재 ※법인부설하는 독립 채산기준적용	복 식 ①	자산		부채		자본		최근 1년 수익		최근 1년 비용		
		단 식 ②	수입						지출				
	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	예술단 항목	명세		공연장 항목		명세		전시 관련 항목		명세		
		전용연습실	㎡		공연장 등록번호 및 날짜				전시장 규모		㎡		
		전용사무실	㎡		객석수 또는 바닥면적(㎡)		석 ㎡		전용사무실		㎡		
		상근임직원 수	명		상근임직원 수		명		상근임직원 수		명		
		전임단원 수	명		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		명		전문인력 고용인원		명		
후원회원 수		명		후원회원 수		명		후원회원 수		명			
그 밖 의 명 세				그 밖 의 명 세				그 밖 의 명 세					

210mm×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연 · 전시 등 실적	연 도	제 목	기 간	장 소 명 (객석 수, 전시면적)	일수 및 횟수	관객 수	유 료 관객 수
	년						
	년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
· 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인력 운영 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도)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도)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도)		

전문예술법인 · 단체 운영실적

(앞 쪽)

법인 · 단체 기본정보	법인(단체)명		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일)				
	소재지		(전화:)				
	대표자 성명						
	대표자전화번호		대표자e-mail				
	법 적 형 태		[] 민법인(재단) [] 민법인(사단)		[] 임의단체		[] 상법인(주식회사)
	사 업 자 등 록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공연장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 법인사업자등록증			[] 개인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법인 · 단체 운영현황	인 력 현 황		구분		총인원	정규직	비정규직	
			공연분야 ①	기획행정인력	명	명	명	
				기술기타인력	명	명	명	
				상근단원	명	명	명	
			전시분야 ②	기획행정인력	명	명	명	
				기술기타인력	명	명	명	
			기타분야 ③	기획행정인력	명	명	명	
				기술기타인력	명	명	명	
				전속단원	명	명	명	
			공 통		구분		총인원	임원
	4대보험	4대보험 가입			명	명	명	
		4대보험 비가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공 간 현 황 1)		전용사무실 규모		m ²	공연장규모 (총 객석수)	석	
			전용연습실 규모		m ²	전시장규모	m ²	
	회 원 현 황		일반회원	개인회원	명	법인회원		
			후원회원	개인회원	명	법인회원		
	재 정 현 황		공 통	수입총액	천원	자체수입	천원	
						공공지원금	천원	
						기부/후원금	천원	개인기부금
기업기부금								천원
지출총액			천원	사업비	천원			
				경상운영비	천원			
				인건비	천원			
복 식	자산	천원	부채	천원	자본	천원		

(뒤 쪽)

활 동 실 적	공 연 · 전 시 적	구분		총 공연실적	공연 일수	공연 횟수	총 관객 수	유료 관객 수
		공연실적	자체기획·제작	편	일	회	명	명
			행사참가·초청	편	일	회	명	명
			대관실적	편	일	회	명	명
		구분		총 전시실적	전시 일수	총 관객 수	유료 관객 수	
		전시실적	자체기획·제작	편	일	명	명	
			행사참가·초청	편	일	명	명	
			대관실적	편	일	명	명	
	지 원 사 업 간 실 적	구분		총 지원사업		총 지원 금액		
		지원사업 실적		건		천원		
	세 부 실 적	공연·전시 제 목	공연·전시 기 간	공연·전시장명	공연·전시 일수	총 관객 수	유료 관객 수	
			~		일	명	명	
			~		일	명	명	
			~		일	명	명	
		~		일	명	명		
		~		일	명	명		
		~		일	명	명		
		~		일	명	명		
		~		일	명	명		
		~		일	명	명		
		~		일	명	명		

1) 법인·단체 기본정보 작성요령

① 사업자등록유형

- 개인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의 번호가 다른 경우 : 개인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을 중복 선택
- 개인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가 같은 경우 : 발행일이 최근인 등록증만 선택

2) 인력현황 작성요령

- ① 고용형태 :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이 모호한 단체에서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집계하여 주십시오.
- ② 기획·행정인력 : 공연(전시)기획, 제작, 홍보, 총무, 인사, 회계 등 기획 및 일반 관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스태프
- ③ 기술·기타인력 : 무대기술관련, 전시설치, 조명, 음향 등 기술 및 기타업무를 담당하는 스태프
- ④ 상근단원(공연분야) : 정기적인 고정급여를 받으며 '주당 3일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배우, 성악가, 연주자, 무용가 등 출연자와 연출가, 안무가, 극작가, 작곡가 등의 작품 관련 스태프 (연습생이나 보조원들은 제외)
- ⑤ 전속단원(기타기관) : 전속단체가 있는 경우, 단체(법인)에 소속되어 정기적인 고정급여를 받으며 '주당 3일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배우, 성악가, 연주자, 무용가, 연출가, 안무가, 극작가, 작곡가 등의 작품 관련 스태프 (연수단원이나 보조원들은 제외)
- ⑥ 공통 : 고정급여를 받는 재직 임원·직원 수 및 임직원 중 4대보험 가입·비가입 인원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3) 공간현황 작성요령

- ① 전용사무실 규모 :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용사무공간의 규모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② 공연장 규모 :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 공연장의 총 객석수를 합산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③ 전용연습실 규모 : 전용연습실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 연습실 규모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④ 전시장 규모 : 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 전시장의 총 면적을 합산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4) 회원현황 작성요령

- ① 일반회원 수 : 유료회원 수 및 무료회원 수, 온·오프라인의 회원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② 후원회원 수 : 귀 단체를 위해 운영하는 후원회의 개인 및 법인 회원 수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5) 재정현황 작성요령

- ① 공통 : 단식/복식부기 방식과 관계없이 모두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② 복식부기단체 : 전년도 기준 자산, 부채, 자본 총액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6) 공연·전시 연간실적 작성요령

- ① 공연·전시 편수 : 연간 진행한 공연 및 전시의 총 작품 수(편수)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② 공연·전시 일수 : 연간 공연 및 전시가 1회 이상 있었던 날짜의 일수를 의미하며 공연의 경우, 하루 3회 공연이 있었다 해도 1일로 산정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③ 공연 횟수 : 연간 진행한 공연의 총 횟수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 하루 2회씩 총 10일간 공연한 경우, 20회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④ 총 관객 수 : 연간 진행한 공연 및 전시의 총 관객 수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⑤ 유료관객 수 : 유료관객이 없을 경우, '0'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⑥ 대관실적 : 전시장 및 공연장 등 공간운영 단체만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⑦ 자체기획·제작 : 단체가 직접 기획하거나 제작한 공연 또는 전시
- ⑧ 행사참가·초청 : 타 기관(단체)에서 주최한 행사(축제)에 참가 혹은 초청된 공연 또는 전시

7) 지원사업 연간실적 작성요령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의 경우, 전년도 지원사업 총 건수 및 지원금 총액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8) 세부실적 작성요령

전년도 대표적인 공연 및 전시사업 세부실적을 5건 내외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최소 1건 이상 작성)

2019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개선 간담회

기획·구성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지원본부 인력양성지원팀

발행일 | 2019년 10월 17일

발행인 | 김도일

발행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57 (연건동)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
교육동 3층, 12층

전화 02-708-2267 팩스 02-708-2243

www.gokams.or.kr / www.gokams.or.kr/artsdb

디자인·인쇄 | 경성문화사

※ 책자의 판매, 전재, 복사를 금합니다.
